

100%
RECYCLED
FIBER

PRINTED WITH
PLANT-BASED
INK



BETTER
CHOICES
LOWER
EMISSIONS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는 방법:

해외 규제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100%
RECYCLED
FIBER

PRINTED WITH
PLANT-BASED
INK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는 방법:
해외 규제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BETTER
CHOICES
LOWER
EMISSIONS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는 방법: 해외 규제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간일	2026년 6월
저자	최윤재 법무팀, 기후솔루션(SFOC) yunjae.choe@fourclimate.org
번역	오주연
디자인	최예진 기후솔루션 제작팀 디자이너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는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최신성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자 및 SFOC는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의 사용 또는 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목차

요약	1
I. 금융 시장 내 ESG 펀드 및 그린워싱	2
II. 전 세계 ESG 펀드 규제 동향	4
1. 미국	4
2. 유럽연합	5
3. 싱가포르	9
4. 한국: ESG 펀드 포트폴리오 투자 기준 미비	9
III. 해외 ESG 펀드 그린워싱 제재 사례	11
1. 미국	11
2. 유럽연합	15
3. 호주	19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
참고 문헌	21

요약

- 지난 10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동시에 그린워싱 리스크와 ESG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 국가는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입법체계를 수립하기 시작함.
- 주요 규제 중 하나는 그린워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임. 펀드명에 ESG 관련 명칭을 사용할 시, 해당 펀드가 ESG 방법론이나 투자자에게 공시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입증하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운용 자산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함.
- 대표적으로 최소 투자 비중을 제안하거나 도입한 국가는 미국(80%), 유럽연합(70%), 싱가포르(3분의 2)이며, 유럽연합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을 상대로 투자 배제 항목도 마련함.
- 국가 차원에서 제도 마련 외에도, 해외에서는 이미 ESG 펀드 그린워싱 수사 및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호주는 기존 증권법을 활용하여 ESG 그린워싱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내 ESG 법이 부재해도 효과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됨.
- 반면 한국은 ESG 펀드에 대한 포트폴리오 최소 구성 기준이나 ESG 규제가 미비한 상황임. 현재 공시 기준 외에는 ESG 펀드 그린워싱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조치가 없는 상황임.
- 본 보고서의 해외 집행 조치 사례를 통해 한국에 규제 체제와 집행 체제 간 공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다 일관성 있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단순 공시를 넘어 실질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엄격한 집행 조치를 바탕으로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해야 할 것임.

I. 금융 시장 내 ESG 펀드 및 그린워싱

금융시장에서 지속가능투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 활동에서 ESG 유무를 중요한 지표로 참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상품에 “녹색(green)” 혹은 “ESG” 같은 명칭이 붙은 경우, 환경에 관심 있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을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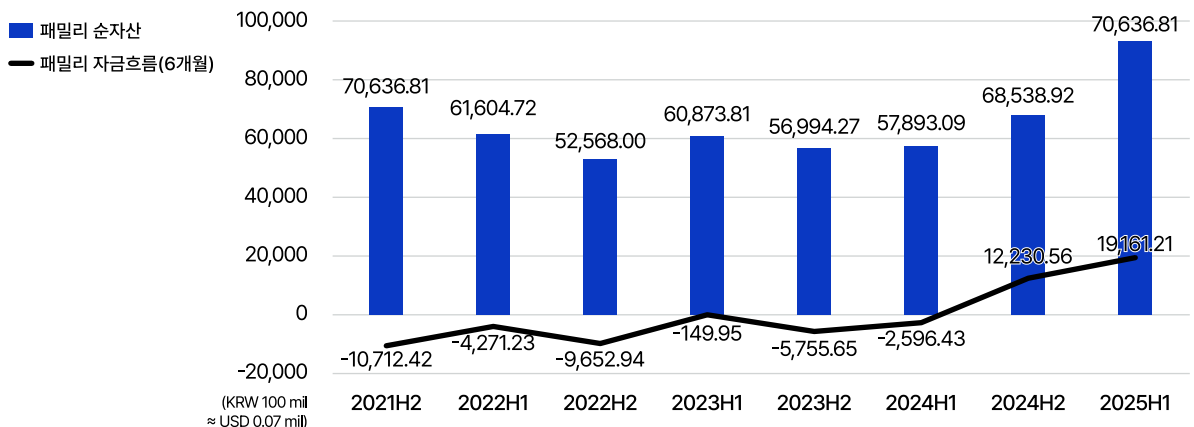
자산관리 전략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1) 뮤추얼 펀드(Mutual Fund), (2)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 ETF) 총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두 개를 합쳐서 ESG 펀드라고 부른다. 재무 포트폴리오에 ESG를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 리스크가 높거나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2.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3. ESG 통합 (Integration): 한 가지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고 투자 전반에 걸쳐 ESG 요소를 고려

ESG 펀드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며 펀드 내에서 ESG 기준을 활용하는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ESG 펀드 운용 자산 규모를 통해 투자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3월 기준 전 세계 ESG 펀드 시장의 총운용 자산(AUM)은 약 5,100억 달러였으며, 2025년 말에는 약 4조 1,300억을 기록했다.

국내 금융 시장을 살펴보면, 한국 ESG 펀드 시장은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뤘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투자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스튜어십 코드 채택 등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2020년 초에는 ESG 공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2020년 7월 기준 총 ESG 펀드 시장 규모는 4,168억원(약 2억 8,000만 달러)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으나, 2025년 6월 기준 국내 ESG 펀드(총 198개)의 순 가치(net value)는 전년 대비 37% 상승한 총 9조 3,800억 원(약 63억 달러)을 기록했다.

[그림 1] 국내 ESG펀드 및 자금흐름 (단위: 억원)



출처: 서스틴베스트, 한국펀드평가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에는 단점도 있다. 자산운용사, 금융자문기관 등 금융시장 참여자(FMP)가 ESG 펀드를 그린워싱하며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이라고 홍보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절차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시는 국내 ESG 펀드 시장이다. 기후솔루션이 2024년 12월 국내 금융사가 제공하는 ESG 펀드 상품 84개를 조사를 한 결과, "녹색" 또는 친환경 등 명칭을 사용해서 홍보하는 국내 채권형 및 주식형 ESG 펀드 중 다수가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 2024\)](#)¹, [세계 석유·가스 퇴출\(Global Oil & Gas Exit List 2024\)](#)²,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s Tracker 2024\)](#)³에 올라간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이 밝혀졌다. 겉으로는 녹색, 친환경 요소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석탄화력발전, 천연가스, 철강 생산 등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즉, 단순히 펀드명과 상품 설명서에 친환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지속가능투자를 중시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으며, 결국 역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ESG 펀드 그린워싱은 한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주요 ESG 펀드 시장에서 널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격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ESG 펀드 그린워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입법 조치와 강화된 규제 등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 시장 내 그린워싱 평가 기준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법이 필요한데, 주요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부문별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강화된 수사와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인 상황이다. 한국 증권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그에 비해 규제 마련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며, 자본 시장 내 그린워싱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미비하다. 기본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 조치나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은 현재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국가 및 한국의 사례를 통해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살펴본다.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규제를 평가하고, 구조적인 한계점을 파악한 후 ESG 펀드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The Global Coal Exit List)는 투자자들이 석탄 채굴, 석탄화력발전 또는 기타 석탄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을 스크리닝하고 투자 철회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2 세계 석유·가스 퇴출 리스트(The Global Oil & Gas Exit List)는 석유·가스 추출 및 생산을 하는 기업들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투자자들에게 기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자금 지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3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는 금융기관이 환경 혹은 사회 리스크가 높은 기업의 투자를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투자 정책과 투자 방향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사이트이다.

II. 전 세계 ESG 펀드 규제 동향

1.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기후 및 ESG 태스크포스(TF)는 ESG 펀드 시장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TF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극적으로 규제 지침 및 집행 조치를 한 바 있다. TF는 기존 증권법하에 집행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ESG 펀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보였다. 2024년에 TF 해체 이후 잇따른 정치 상황으로 현재 규제 강도는 다소 약화됐지만,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던 이 시기에 수립된 기본적인 체계와 선례는 오늘날 SEC 집행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명칭 규정(Names Rule) 개정안 및 최소 80% 투자 기준

SEC의 금융시장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펀드 명칭 규정이다. 2023년에 개정된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펀드 상품명에 관한 규정\(Rule 35d-1\)](#), 일명 "명칭 규정"은 투자회사(Registered Investment Company) 혹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가 특정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펀드명을 지을 때, 펀드 보유 자산의 80%를 반드시 펀드명에 맞추어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펀드명에 특정 증권 유형, 산업, 지역, 절세 투자 전략 중심이 들어갈 때만 투자 비중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ESG와 같은 투자 요소까지 확대하여 반영하지는 않았다.

명칭 규정은 기존에 적용 대상이었던 자산 유형, 산업, 지역과 같은 항목에 더불어 ESG,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80% 투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 "가치" 혹은 "지속가능", "녹색",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ESG 용어가 들어간 펀드도 명칭 규정 적용 대상이다. 명칭 규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 참여자는 해당 용어가 들어간 펀드를 구성할 때 펀드 자산의 최소 80%가 ESG 기준과 공시된 방법론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에는 ESG 펀드 상품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및 공시 의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SEC에 등록된 ESG 펀드는 증권 신고서에 펀드명에 사용한 용어를 정의해야 하며, 해당 정의에 상응하는 투자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ESG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정의는 사전 정의나 업계에서 쓰는 용어와 일치해야 한다. 펀드명과 포트폴리오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해 80% 기준 준수 여부를 최소 분기별로 점검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보유 자산이 80% 기준을 이탈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중을 맞춰야 하고, 유예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대형 자산운용사는 2026년 6월, 소규모 자산운용사는 2026년 12월까지 명칭 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명칭 규정이 향후 SEC 집행 조치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현 미국 정치 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ESG 정책이 후퇴하는 양상이지만, 명칭 규정을 통해 미국이 ESG 펀드의 투명성 강화하고자 기반을 마련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다층 거버넌스 구조를 바탕으로 ESG 펀드를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를 마련했다. 범유럽 차원에서 E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과 지침을 채택하고 있다. EU 금융 규제 당국인 유럽증권시장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규정을 감독 기대 사항과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회원국에 전반에 일관성 있는 감독 및 규정이 적용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회원국의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NCA)은 각국의 법체계 내에서 EU 지침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는 ESG 펀드 상품의 공시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s)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수립하여 EU 택소노미(Taxonomy)와 저탄소 벤치마크 기준(Low Carbon Benchmarks Regulation)과 더불어 SFDR를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가 기업 및 금융상품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⁴

2021년 시행된 SFDR에 따라 금융시장 참여자는 기업 및 금융상품 정보를 상세히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이 제도의 핵심은 투자 전략에 따라 ESG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고려해 펀드를 단계적으로 분류한다.

- (1) 제6조: ESG 특성을 홍보하지 않는 펀드
- (2) 제8조: 환경 혹은 사회적 요소를 강조하는 펀드
- (3) 제9조: 지속가능투자 목적을 명시하는 펀드

각 펀드 상품에 ESG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시 기준이 단계별로 결정된다.

[표 1] SFDR 펀드 구분 기준 및 공시 요건

구분	제6조	제8조 (Light Green)	제9조 (Dark Green)
금융 상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요소 혹은 지속가능성 목적 명시 X • 리스크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요소 홍보 • 지속가능투자 포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소노미 적합성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투자 전략 명시
투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투자 요건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투자 의무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지속가능투자" 해야 함

4 SFDR은 주로 UCITS 지침 및 대체투자펀드운용사 지침(AIFMD)에 따라 영업하는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며, 포트폴리오 운용사, 보험기반 투자 상품 제공기관, 연금상품 제공기관 등 투자상품을 설계-제공하거나 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기타 금융기관에도 적용된다.

지속가능투자 항목	• 해당 X	• 필수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을 충족해야 함 - 환경 혹은 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 - 환경 혹은 사회 목적에 기여 무해원칙(DNSH)을 준수 - 우수한 거버넌스 준수
공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어떻게 통합했는지 공시해야 함 • 없을 시, 이유 설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을 공시해야 함 - ESG 이행 여부 및 정량화 - (있을 시) 지속가능투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을 공시해야 함 - 지속가능투자 비중 - 탄소노미 연동 투자 비중
EU 탄소노미 정합성	• 필수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요소 홍보 시, 탄소노미 정합성 공시해야 함 • 최소 투자 기준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노미 정합성 공시 필수 • SFDR 최소 기준 적용 X
* (제7조) 주요부정영향 (Principal Adverse Impact, P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금융 상품은 PAI를 고려했음을 공시해야 함 • 고려한 경우 → 구체적인 PAI 통합 방법 설명 필요 • 고려하지 않은 경우 → 부연 설명 필요 		

위와 같이 분류되는 펀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제7조(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악영향 공시)이다. 제7조에 따라 금융시장 참여자는 ESG 요소가 투자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공시해야 하고, 기업 및 금융상품 단위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통합시켰는지 설명해야 하며, 주요부정영향(PAI)을 정량화하여 투명성을 재고하고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ESMA 펀드명 가이드라인: 투자 비중 80% 및 PAB/CTB 투자 배제 기준

SFDR을 통해 ESG 펀드의 컴플라이언스 구성 요소를 정량화할 수 있지만, 유럽 금융 규제 당국인 ESMA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필수 항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SMA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각 EU 회원국의 금융 시장을 관리, 감독 및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중 하나는 해석 지침과 Q&A를 통해 EU법을 각 국가 법 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ESMA의 대표적인 규정은 [ESG 및 지속가능성 펀드명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주요 조항은 SFDR 하에 ESG 펀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관련 투자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합성 기준뿐만 아니라 ESMA 가이드라인은 탄소노미 관련 “기후 전환 벤치마크(Climate Transition Benchmark, CTB) 혹은 파리협약 연계 벤치마크(Paris-Aligned Benchmark, PAB)”에 따른 투자 배제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기준에 부합하는 ESG 펀드의 범위가 한 층 제한되는 것이다. 각 펀드 유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2]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소 투자 기준

항목	전환 (Transition)	환경(Environmental)	임팩트 (Impact)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펀드명에 관련 용어	“전환” 관련 파생어 예: “전환중인” “전환의”, “개선”, “진전”, “진화”, “변화”, “넷제로” 등에서 파행한 단어	투자자에게 환경 요소를 홍보한다는 인상을 남기는 단어 예: “녹색”, “환경적”, “기후”	“임팩트” 관련 파생어 예: “임팩트를 미치는”, “임팩트 있는”	“지속가능” 관련 파생어 예: “지속가능성”

최소 투자 기준	SFDR 기준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목적 투자 비중: 80%	SFDR 기준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목적 투자 비중: 80%	SFDR 기준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목적 투자 비중: 80%	SFDR 기준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목적 투자 비중: 80%
최소 투자 배제 기준	CTB	PAB	PAB	PAB
추가 요건	사회 혹은 환경 전환을 위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함	X	투자 수익과 더불어 정량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 혹은 환경 영향을 목표 하는 투자	SFDR에 따라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 "의미있는 (invest meaningfully) 투자" 의지를 보여야 함

출처: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ESMA Guidelines on ESG or Sustainability-Related Fund Names \(Nov. 6, 2024\)](#)

ESMA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소 투자 요건은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국 법체계에 도입 여부는 관할 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MA는 각 관할 당국이 "최선을 다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각 법 혹은 감독 체계에 가이드를 적절히 통합시킬 것을 기대한다. 소위 "Comply-or-Explain(원칙 준수, 예외 설명)" 원칙 하에, 각국 관할 당국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ESMA 가이드라인을 (1) 준수할 것인지, (2) 준수하지는 않지만 향후 준수할 의향은 있는지, 혹은 (3) 준수하지 않고 향후 계획도 없는지 통지해야 했다. 2025년 3월 기준 EU 회원국 대다수가 성명서 발표를 통해 ESMA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 내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SFDR 2.0

기존 SFDR 체제는 2021년부터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기준을 명시해왔다. 하지만 2025년 11월 20일 유럽 집행위원회가 SFDR 2.0을 제안하면서 금융상품 분류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상품 분류 체계와 관련 공시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3] SFDR 2.0에 따른 펀드 분류 기준 및 주요 요건

분류	Art. 6 (비ESG)	제7조 (전환)	제8조 (기본ESG)	제9조 (지속가능성)
목적	비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을 향한 사업/자산의 전환에 투자 전환에 기여하는 투자 	리스크 관리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여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약속 및 활동에 투자
자산배분 기준	대상 아님	SFDR 기준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목적 투자 비중: 80%	SFDR 기준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목적 투자 비중: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증진에 직접 기여
목표	대상 아님	✓ 최소 70% 지속가능투자 (혹은 탄소노미 연동 비중 최소 15%)	✓ ESG 목표와 최소 70% 부합해야 함	✓ 최소 70% 지속가능투자 (혹은 탄소노미 연동 비중 최소 15%)
투자배제 기준	적용 대상 X	지속가능성 요소에 관련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전환	투자 전략과 연계된 지속가능성 요소 통합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지속 가능성 목표 (환경 및 사회 요소 포함)
적격 펀드	투자배제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B ✓ 화석연료 사업(석탄, 갈탄, 석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B 전면 적용 ✓ 화석연료 사업(석탄, 갈탄, 석유)

(규정상 인정)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기후 벤치마크 • 탄소노미에 부합하는 전환 활동 • 신뢰할 수 있는 전환계획 또는 과학기반 목표를 보유한 기업 • 투자자 관여 전략 및 단계적 접근법을 수반한 투자 • 포트폴리오 단위 전환 목표 (예: 배출량 감축) • 기타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전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벤치마크 등급을 초과 달성하는 투자 • 지속가능성 지표상 초과 달성하는 투자 • 지속가능성 준수 기준 입증 완료 • 제7조 혹은 제9조 투자와 조합 • 기타 지속가능성 통합 투자(근거 설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PAB 포트폴리오 • 탄소노미 부합 활동 • EU 녹색채권 상품 (EuGB) • EU 지원 투자 (예산 보증/사업) •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기타 투자(근거 설명 필요)
추가적용 기준	제한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지속가능성 중심 펀드가 아닐 경우 계약 전 공시 의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단위 PAI 공시 • 기업 단위 PAI 공시 의무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단위 PAI 공시 의무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단위 PAI 공시 • 기업 단위 PAI 공시 의무 X

출처: [Arendt & Medernach, SFDR 2.0 – EU Commission Publishes Legislative Proposal to Review SFDR \(Nov. 20, 2025\)](#); [PwC Switzerland. The SFDR Overhaul: New Categories, New Rules, New Expectations.](#)

SFDR 2.0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정보 중심 공시를 넘어 금융상품 중심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다 엄격하고 표준화된 분류 기준을 도입하면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SFDR에는 “기본 ESG”, “전환”, “지속가능성” 세 가지 상품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각 기준의 ESG 특성과 목표가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포트폴리오 정합성 요건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금융 상품 투자 자산 중 70%를 분류 기준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PAB와 CTB를 바탕으로 화석연료 확장 사업이나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규정도 적용된다. 기존 EMSA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지만, SFDR 2.0은 EU 체제 내에 정합성 기준과 최소 투자 제한 기준을 공식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이 유의미한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개정안에 미흡한 점도 있다.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야심찬 목표를 세운 제도인지, 내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며 투자 기준 70%는 기존 ESMA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80% 기준 대비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더불어 해당 투자 기준은 특정 펀드가 EU 탄소노미와 15% 이상 정합성을 달성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전환” 및 “지속가능” 기준에서 예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 배제 기준은 모든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기본 ESG” 항목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활동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기업 단계 보고 등 제안서에 나온 수정 사항으로 금융상품 단계 내용과 종합적인 지속가능투자 전략이 불일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 투명성 및 투자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존 ESMA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여러 우려 사항과 한계점이 있었지만, 포트폴리오 정합성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과, PAB/CTB 중심 투자 배제 기준이 유럽 법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점과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된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강화된 공시 요건과 더불어 ESG 펀드 포트폴리오 적합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 체계를 채택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2022년 [ESG 펀드를 위한 공시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해소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ESG 관련 용어를 명칭이나 홍보 자료에 사용하는 펀드에 적용되며, 펀드명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펀드 상품의 ESG 투자 중점, 전략, 참고 기준, 관련 리스크뿐만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활용한 데이터와 지표 등 상품 단계 정보를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 공시 외에도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책임감 있는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 상품 출시 이후에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ESG 목표를 달성했는지, 공시한 투자 전략에 따른 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ESG 방향성에 대한 변경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최소 자산 배분 기준을 포함하여 ESG 중점 사안과 포트폴리오의 적합성 수준까지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펀드를 ESG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선 투자”해야 하며, 순자산 가치의 최소 3분의 2가 투자 전략과 일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단순 공시를 넘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 ESG 펀드 포트폴리오 투자 기준 미비

한국에서는 2020년대 초부터 ESG 펀드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23년 3월 전담 TF 발족 이후, ESG 펀드 마케팅 및 공시 관행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금융감독원이 2023년 10월 5일 ESG 펀드를 위한 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 ESG 펀드 공시 기준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2024년 2월 발효)에 따르면 펀드 명칭이나 투자 목적에 “ESG”가 포함될 시, 증권 신고서에 ESG 통합, 투자자를 위한 투명성 재고 및 그린워싱 리스크 해결 방안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에 주요 정보를 사전 공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펀드 출시 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인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표 4] 대한민국 ESG 펀드 공시 기준 - 공시 요건 (금융감독원, 2023년 10월)

공시 대상	
(1)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2) 투자 목적 혹은 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 및 기재하는 펀드	
상세 요건	
투자 목적 및 전략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의 투자 목적을 명시하고, 투자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와, ESG 평가 방법과 내용을 포함하여 펀드 투자 전략과 ESG 간 연계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상세 ESG 평가 방법	ESG 평가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성되며,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평가 절차와 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펀드 관리 역량	인적 및 조직 자원에 대한 ESG 정보(예: ESG 펀드 운용 경력, 전담 ESG 직원/부서)는 별도 공시해야 한다.
투자 리스크	일반 리스크: ESG 성과가 개선되거나 ESG 전략을 도입해도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특수 리스크: ESG 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투자 기업에 환경 및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리스크를 포함하여 ESG 투자 전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공시해야 한다.
비용 및 지출	펀드 자산에서 외부 ESG 평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구체적인 계약 사항과 상세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펀드 성과 공시	ESG 투자 전략의 이행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가능할 시 비교 대상 대비 펀드의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 핵심 투자 전략으로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을 포함하는 펀드는 상세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예: 주주 활동 도입 현황).

하지만 펀드 공시기준만으로 최소한의 ESG 연관성만 지닌 펀드를 제공하는 금융시장 참여자를 제재하기에는 규제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의 법체계나 국내 여타 제도에는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거나 홍보 자료에 포트폴리오 최소 구성요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ESG 방법론에 따른 포트폴리오 펀드 정합성 비중(예: 80%, 2/3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법이나 규제 지침에 해당 항목이 부재한 상황이다.

• 현 펀드 명칭 규정, 테마형 투자 제외

현 펀드 명칭 제도는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펀드의 운용 대상에 따라 펀드를 구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펀드로 나뉜다(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상호 또는 명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제183조제1항).

더불어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 종류에 따른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상품명에 따른 자산 분류 기준에 투자해야 한다(제229조 및 시행령 제240조).

하지만 한국 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자산 분류 체계에 한정되어 있다. 펀드 명칭과 자산 구성요소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테마별 혹은 ESG 특징 등 전략 중심 분류 기준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 상품 대비 투자 전략이나 목표가 명확한 ESG 펀드와 현 기준 간 실질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한국의 현 규제 체계만으로는 ESG 펀드가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펀드의 구성요소와 ESG 기준 간 일관성 유지를 위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개념 정립 및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규제 마련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다음 장에서는 ESG 펀드 그린워싱 제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해외 사례를 다룬다. ESG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해도, 기존 법 제도를 활용하여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하면 충분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III. 해외 ESG 펀드 그린워싱 제재 사례

1. 미국

미국 SEC의 ESG TF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ESG 펀드 그린워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ESG 법안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ESG 관련 법안 발의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 증권법을 활용하여 펀드 공시 내역, 홍보 자료 및 투자자 소통 내역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ESG 관련 문구를 지적했다.

[표 5] (ESG TF 출범 전) 미국 증권법 조항

<p>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a)항 (15 U.S.C. § 77q(a)) 증권의 청약 또는 매도 시 사기,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및 오해를 유발하는 누락을 금지함. <p>1934년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b)조 (15 U.S.C. § 78j(b)) 증권 매수 혹은 매도 시 사기적 또는 시세조정적 행위를 금지함.• 규칙 10b-5 (17 C.F.R. § 240.10b-5) 제10(b)를 적용하는 규칙으로, 투자자 소통 및 공시에서 주요 사항의 허위 기재, 누락 및 사기적 행위를 금지함. <p>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6조 (15 U.S.C. § 80b-6) 고객과 잠재 고객을 상대로 투자자문사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기 방지 기준을 마련함. <p>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b)조 (15 U.S.C. § 80a-33(b)) 등록된 투자회사가 증권등록서, 보고서 혹은 기타 서류에 중요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을 금지함.• 제35(d)조 (15 U.S.C. § 80a-35(d)) • 등록된 투자회사가 중요한 기망적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혹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규칙 35d-1 ("명칭 규정") (미국 연방규정집 17 C.F.R. § 270.35d-1) 제35(d)를 구체화하는 규칙으로, 펀드명을 규정하고 펀드명과 실제 투자 특성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상기 법 조항을 근거 삼아 SEC는 주요 자산운용사가 시장참여자를 상대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시기 SEC의 집행 조치를 바탕으로 ESG 법이 없어도, 기존 증권법을 활용하여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ESG 투자에 대한 널리 통용된 정의에 의존하는 것보다 SEC는 '기업들이 공시한 내용의 정확성, 실용성, 일관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 사례를 통해 SEC가 ESG 부정행위를 처벌한 집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BNY 멜론 투자자문 사례 \(2022\)](#)

• 위반 사항

- ESG 투자 절차 및 검토 사항 허위 공시: 투자 전반에 걸쳐 자체 ESG 도구 및 ESG 품질 검토를 체계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일관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허위 공시: 투자 설명서, 이사회 자료, 제안요청서에 모든 투자 내역에 대한 ESG 리스크 및 품질 평가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부정확한 정보였다는 점이 밝혀짐.

- 정보 공시 누락 및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투자 시점 ESG 검토 점수가 없었다는 점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ESG 정보를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시행하지 않음.

• 근거 법령

-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제206(2)조 및 제206(4)조, 시행 규칙 206(4)-7 및 206(4)-8

- 투자회사법 제34(b)조

• 처분 결과

BNY 멜론은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과징금 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2022)

• 위반 사항

- 공시내역 허위 표시 및 오인: ESG 투자 설문지 및 평가 도구를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ESG 점수를 바탕으로 종목 선별 및 비중을 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짐.

- ESG 정책 일관성 부족: 명시한 절차(예: 사전에 ESG 투자 설문지 응답) 미준수, ESG 연구 결과 일관성 없이 적용, 일부는 투자 결정이 내려진 후 ESG 관련 분석을 한 것이 밝혀짐.

- 거버넌스, 관리 감독, 기록 미이행: 관련 지침, 감독 사항이 미흡하여 운용사 직원이 ESG 요건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취급했으며, ESG 투자 설문지 응답 등 필수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 근거 법령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제206(4)조, 규칙 206(4)-7

• 처분 결과

골드만삭스는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과징금 4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 DWS 자산운용 미국 (2023)

• 위반 사항

- ESG 통합성 및 도구 허위 표시: 체계적으로 ESG 요소를 통합시키고 ESG 엔진 등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이 밝혀짐.

- 대외 소통 오인 유도: 내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ESG 절차를 수립한 것처럼 포장하여 홍보 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

- 감독 및 컴플라이언스 미이행: ESG 분석을 면밀히 모니터링, 기록, 인증하지 않았으며, ESG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성 파악을 위해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 근거 법령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제206(2)조 및 제206(4)조, 시행 규칙 206(4)-7 및 206(4)-8

• 처분 결과

DWS는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과징금 1,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위스덤트리 자산운용 \(2024\)](#)

• 위반 사항

- 투자 제한 항목 허위 공시 및 정보 투명성 부족: 투자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공시하지 않고 주요 용어와 분석 한계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며 단순히 화석연료 및 담배 기업에 투자를 제한했다고 밝힘.
- 데이터 신뢰성 및 투자 이행 문제: 신뢰할 수 없는 제3자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투자 배제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짐(예: 천연가스, 석탄 유통, 담배 제품 판매).
- 정보 공시 및 지배구조 문제: 규제 당국의 수사 전까지 투자 설명서와 이사회 공시 자료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했으며 ESG 스크리닝 및 투자 제외 기준에 대한 공식 규정과 절차를 수립하지 않음.

• 근거 법령

-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제206(2)조, 제206(4)조, 규칙 206(4)-7, 206(4)-8

- 투자회사법 제34(b)조

• 처분 결과

위스덤트리는 과징금을 400만 불을 지불하기로 합의함.

◆ [인베스코 어드바이저스 \(2024\)](#)

• 위반 사항

- ESG 통합 과잉 공시 및 허위 분류 기준: 운용자산의 상당 부분이 ESG 통합 투자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ESG와 관련성이 낮은 패시브 ETF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투자 방법론 불일치 및 대외 소통 문제: 정의가 모호한 ESG 통합 기준을 사용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발표, 보고서, 홍보 자료 배포함.
-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문제: 내부 우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ESG 관련 수치를 과장했으며 ESG 공시를

위한 명확한 서면 정책 및 절차가 부족했음.

• 근거 법령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제206(2)조 및 제206(4)조, 규칙 206(4)-1(a)(5), 206(4)-7 및 206(4)-8

• 처분 결과

인베스코는 1,750만 달러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수사 종결됨.

미국 집행 사례를 통해 ESG 공시 내용을 과장하거나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존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그린워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현 정치 상황 속 집행 조치 수준이 다소 완화되었고 SEC는 더 이상 ESG를 우선순위에 두고 수사하지 않지만, 그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향후 ESG 그린워싱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명칭 규정이 2026년 12월에 시행되면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체제가 한 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유럽연합

현재 EU 회원국은 ESMA 가이드라인을 국내 법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투자 비율 80% 기준이나 PAB/CTB 투자 제한 기준을 직접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당국이 집행 조치를 취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MA 가이드라인 채택 이후 일부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ESG 펀드 그린워싱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전 집행 조치를 통해 가이드라인 채택 이전 제재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EU를 회원국 사례를 통해 ESMA 가이드라인 도입 전후로 집행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가 ESMA 가이드라인 채택 당시 관할 당국이 아비바 인베스터 룩셈부르크(Aviva Investors Luxembourg S.A., 아비바)가 최초로 제재를 한 시기와 겹친다. 규제 당국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CSSF-아비바 인베스터스 룩셈부르크 \(2024\)](#)

• 위반 사항

- 공시 내용과 실제 투자 간 불일치: SFDR 제8조에 해당하는 하위 펀드를 운용하며 포트폴리오 투자 내역이 투자 설명서와 계약 전 공시 서류에 명시된 ESG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최소 투자 기준 위반 및 지속가능성 근거 미비: 공시된 ESG 점수 최소 기준(순자산의 약 5.5%)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예: 국채)을 보유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 없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문제:** 투자 의사 결정 방식이 지속가능성 지표와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감독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음.

• 근거 법령

- 2010년 12월 17일 룩셈부르크 법 (2010년 12월 17일) 제109조1(a)항(자산운용사가 건전한 행정절차 및 효과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제111조(a)-(b)조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UCITS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 주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처분 결과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CSSF)는 2024년 10월 아비바를 상대로 조직 구성 요건 및 규칙과 관련 의무를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함.

(2) 독일

미국 SEC는 2023년 DWS 그룹의 ESG 통합 허위 공시를 사유로 과징금 2,500만 불을 부과했으며, 이후 2025년 독일 검찰청이 DWS를 상대로 다년간 그린워싱 혐의로 추가 과징금 2,500만 유로 처분을 내렸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 DWS 그룹 및 DWS 인베스트먼트 \(2025\)](#)

• 위반 사항

- 2020년 중순부터 2023년 1월까지 금융 상품의 ESG 통합 요소를 과장해서 지속가능금융을 앞장서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으나 실제로 투자 방향성과 불일치한 것으로 밝혀짐.
- 대외적으로 DWS는 “ESG 리더”, “ESG는 자사 DNA의 핵심”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으나 실제 ESG 요소는 일부 투자 상품에만 고려함.
- 고객사와 투자사에 ESG 통합 정책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ESG 공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내부 통제가 미흡했음.

• 처분 결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청은 DW 그룹 및 DWS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과징금 2,500만 유로를 부과했음. 이는 독일 검찰이 부과한 최대 규모의 그린워싱 벌금으로, 독일 연방범죄수사국과 함께 진행한 3년간 공동 수사가 종결됨.

(3) 프랑스

프랑스는 ESMA 가이드라인 도입 전 프랑스는 이미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⁵ 라벨 체계를 바탕으로 집행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금융시장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이 자산운용사 PREIM에 ESG 실사 미흡, 기록물 부족 및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 배분 방식을 사유로 제재를 한 사례가 있다.

◆ [프랑스 금융시장청\(AMF\)-프리모니알 REIM 합의 건 \(2024\)](#)

• 위반 사항

- ESG 관련 증빙 미비 미흡 및 시점 관리 부실: 투자 결정 당시 자산의 ESG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 않음. 실사 과정과 연계된 기록 대신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과정을 추적할 수 없음.
- 투자 규정 미준수 및 수치 소급 조정: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한 후 ESG 등급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정함. 사후 투자 요건에 부합하도록 임의로 등급을 조정하는 시도로 판단됨.
- 추적 가능성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공백: 펀드 전반에 걸쳐 ESG 의사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감사 절차와 근거가 부족하며, 공시된 ESG 목적 및 적격성 기준의 준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함.

• 근거 법령

- 유럽 집행위원회 위임 규정(Delegated Regulation No. 231/2013) 제18조(대체투자펀드운용사가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고 투자자산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유지하도록 요구)
- AMF 일반 규정 제319조제3(1)항(자산운용회사가 정직하고 충실하게 행동하며, 상당한 주의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

• 처분 결과

PRIEM은 2024년 2월 28일 프랑스 국고에 4만 유로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함.

현재 프랑스는 ESMA 가이드라인을 국내 규제 체계에 반영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동 가이드라인의 80% 편입 기준이나 PAB/CTB 투자 배제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5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라벨은 2016년 프랑스 경제재정부가 ESG 요소를 투자 전략에 포함하는 펀드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이다. 투자자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투자 절차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투자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펀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SRI 라벨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펀드에 ESG 목표를 명시해야 하며, 엄격한 평가 기준 방법론과 ESG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투자자 관여, 투명한 보고체계를 통해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기준을 반영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SRI 라벨은 외부 심사 후에 발급되며,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사회단체들은 ESG 펀드 그린워싱 혐의를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예시는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을 상대로 그린워싱을 신고한 사건이다. 블랙록이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홍보한 액티브 펀드 상품 18개를 과장 홍보했고 주장했다.

◆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블랙록 상대로 그린워싱 신고

• 위반 사항

- **지속가능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명칭 및 DNSH 위반:** 블랙록은 운용하고 있는 펀드 18개를 “지속가능(sustainable)”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화석연료 자산 10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며, SFDR의 중대한 피해 방지(Do No Significant Harm, “DNSH”) 원칙을 위반한 혐의
- **공시된 투자 배제 기준과 불일치 및 공시 문제:** 연료용 석탄(Thermal coal)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투자설명서상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며, 계약 전 공시 및 정기 보고(SFDR 제10조에 따른 공시 의무 포함)에서 이러한 불일치 사실을 적절히 공시하지 않음.
- **ESMA 가이드라인에 따른 명칭 규정 미준수:** 화석연료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노출도를 유지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ESMA 가이드라인을 위반함.

• 근거 법령

- **SFDR 요건:** DNSH 원칙 및 제10조 공시 의무를 포함한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SDF) 요건
- **펀드 명칭에 대한 ESMA 가이드라인:** 펀드명에 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사용할 시 ESMA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화석연료 노출도 등 펀드명과 부합하지 않는 투자는 제한됨.

• 결과

- **펀드 재구성 및 명칭 변경:** 그린워싱 신고 이후 블랙록은 2025년 3월 펀드 18개 중 17개를 재구성했다. 펀드 14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보다 엄격한 화석연료 투자 제한 기준을 채택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해당 사건은 AMF 공식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린워싱 신고를 통해 블랙록은 미흡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모두 EU 법을 자국 법률 체계에 활용하는 등 관할 당국이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기 예시 외에도 다른 EU 회원국도 향후 ESMA의 펀드명 가이드라인 및 집행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금융시장청(Financial Markets Authority)은 “펀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행정 처분” 대상이며, 투자펀드법에 따라 최대 벌금 6만 유로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유사하게

노르웨이 금융감독청 집합투자부서 국장은 “위법 정도에 따라 비판 및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3. 호주

호주는 미국과 EU 회원국과 달리 아직 ESG 펀드 그린워싱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ESG 법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ESG 그린워싱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기존 증권거래법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가 허위 사실 혹은 오인을 유도할 시 책임을 묻고 있다. 2020년대 초부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는 위반 통지서 15건 이상 및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금융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수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ASIC가 금융산업의 오인 유도 혹은 기만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01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ASIC Act)을 바탕으로 집행 조치가 이루어졌다.

[표 6] 증권투자위원회법 관련 조항

2001년 증권투자위원회법	<p>제12DB조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p> <p>(1) 누구든지 상거래 과정에서 금융 서비스의 공급 또는 공급 가능성과 관련하여, 혹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금융 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 해당 서비스가 특정 기준, 품질, 가치 또는 등급에 해당한다는 허위 또는 오인을 유도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p> <p>.....</p> <p>(e) 해당 서비스가 후원, 승인, 성과상의 특성, 용도 또는 혜택을 지니고 있다는 허위 또는 오인을 유도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p> <p>제12DF조 금융서비스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p> <p>(1) 누구든지 상거래과정에서 금융 서비스의 성격, 특성, 목적 적합성 또는 수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다음은 대표적인 ASIC이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로, 두 사례 모두 과징금 부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 [ASIC v. 호주 연기금 Mercer Superannuation \(2024\)](#)

• 위반 사항

- 지속가능성 허위 주장: 금융상품 중 “지속가능성 플러스(Sustainable Plus)” 투자 옵션에서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석 연료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will not invest)”이라고 단언하여, 지속가능성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의 오인을 유도함.

- 투자 원칙과 상충하는 자산 보유 및 이행 체계 부실: 투자 배제 대상(예: 발전용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배제 정책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집행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이나 관련 보고서 활용 등 실질적

인 이행 조치를 소홀히 함.

-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문제 장기화:** ESG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위반 행위가 지속되었으며, ESG 공시 정확성을 입증할 내부 제도가 매우 미흡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근거 법령

증권투자위원회법 제12DB조제(1)(a)항 and 제12DF조제(1)항

• 처분 결과

호주 연방법원이 2024년 8월 1,130만 호주달러 과징금을 부과함.

◆ [ASIC v. 뱅가드 \(2024\)](#)

• 위반 사항

- **투자자 오인을 유도하는 ESG 정보:** 투자 설명서, 홈페이지 등 ESG 펀드가 윤리적으로 스크리닝을 마친 투자 전략을 따랐다고 여러 차례 주장함.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ESG 기준에 따라 검증되었으며 부적격 자산은 철저히 배제된다고 공시함.
- **공시 내용과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요소 불일치:** 보유 자산의 대다수(약 74%)가 내부 스크리닝을 거치지 않았으며, 스크리닝 방법론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자산군 전반에 스크리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문제:** 보유 자산을 공시한 ESG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지 않음. 특히 ESG가 펀드의 핵심 요소였고 해당 기간 투자액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의 엄중함이 더욱 크다고 판단됨.

• 근거 법령

증권투자위원회법 제12DB조제(1)(a)항, 제12DB조제(e)항 및 제12DF조제(1)항

• 처분 결과

2024년 9월 호주 연방법원은 그린워싱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290만 호주달러를 부과함.

상기 두 사례는 호주의 대표적인 그린워싱 집행 조치 사례이며, 보다 포괄적인 그린워싱 신고 사례는 [증권투자위원회법위반통지서 등록부](#)와 지속가능 금융시장 전반에 선제적인 수사 기록을 자세히 담은 [중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3월 [액티브 슈퍼\(Active Super\)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과징금 1,050만 호주달러를 부과한 사례를 통해 호주 당국의 엄중한 집행 조치는 현재진행형이다. ESG 법률이 부재하지만 ASIC은 일관된 자세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고, 여러 사건에서 꾸준히 비슷한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ASIC의 제재를 통한 시장 억제 정책을 중점에 두고 그린워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해외 사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ESG 펀드 그린워싱 리스크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점과 그린워싱이 주요 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ESG 라벨을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해당 펀드는 석탄, 가스 및 환경에 유해한 산업과 관련된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의 신뢰도와 노력을 훼손한다.

한국에서는 ESG 펀드를 홍보하는 방식과 명칭에 비해 포트폴리오 구성 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비추어봤을 때, 보다 엄격한 규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ESG 공시 기준을 도입했지만, 현 체제는 정량화된 포트폴리오 정합성 요건이 부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독 기관의 검토나 집행 조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시 절차만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ESG 펀드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를 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최소 포트폴리오 투자 기준과 투자 배제 기준을 통해 펀드의 ESG 전략 공시 내용과 실제 주식보유현황이 일치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효과적인 규제 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한국도 ESG 펀드 분류 기준을 설계하기 위해 비교 가능한 정량 요건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호주의 사례를 통해 명시적 규정이 도입되기 전부터 기존 체계에 명시된 법 집행을 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시장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한국의 규제 당국 및 법 집행 기관은 (1) 정량화된 정합성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하고 (2) 당분간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한 현 법체계하에 집행을 강화하는 2단계 접근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ESG 그린워싱은 단순히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아니라 시장 건전성의 문제이다. 민간 자본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자본 배분 방식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환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동시에 투자자 신뢰를 잃는 이중고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ESG 라벨이 붙은 투자 상품이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더 엄격한 절차를 통해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투자 배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Quinn Curtis, Jill Fisch & Adriana Z. Robertson, *Do ESG Funds Deliver on Their Promises?*, 120 Mich. L. Rev. (2021).
- 박혜진, 「국내 ESG 펀드의 현황 및 특징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제20-28호 (2020).
- Lee Kyung-min, *ESG Responsibility Changes Financial Investment Landscape*, Korea Times (Mar. 3, 2021). <https://www.koreatimes.co.kr/economy/20210303/analysis-esg-responsibility-changes-financial-investment-landscape>
- Sustaininvest, *2025H1 ESG Fund Market Review* (Press Release, Sept. 25, 2025). <https://www.sustaininvest.com/news/release/3244?back=%2Fnews%2Frelease%3FcurrentPageNo%3D1%26record-CountPerPage%3D10%26searchType%3Dboth>
- Heather Farmbrough, *Reports Say Too Many ESG Funds Are Greenwashing and Misleading*, Forbes (Feb. 28, 2025). <https://www.forbes.com/sites/heatherfarmbrough/2025/02/28/reports-says-too-many-esg-funds-are-greenwashing-and-misleading/>
- Anderson P.C., *SEC Shifts Focus: Climate and ESG Enforcement Task Force Disbanded*, Lexology (Sept. 17, 2024). <https://braedenanderson.com/insights/sec-shifts-focus-climate-and-esg-enforcement-task-force-disbanded>
- Bloomberg Law, *SEC Quietly Dissolves Climate and ESG Enforcement Task Force* (Sept. 12, 2024). <https://news.bloomberglaw.com/esg/sec-quietly-dissolves-climate-and-esg-enforcement-task-force>
- Iacurci, G., *Trump-Fueled Backlash "Intensified" Flight from ESG Funds, Morningstar Finds*, CNBC (Apr. 28, 2025). <https://www.cnbc.com/2025/04/28/trump-esg-funds-backlash.html>
- *Investment Company Names*, Investment Company Act Release No. 24828 (Feb. 1, 2001). <https://www.sec.gov/rules-regulations/2001/01/investment-company-names>
- *Investment Company Names*, Securities Act Release No. 33-11238; Exchange Act Release No. 34-98438; Investment Company Act Release No. 35000 (Oct. 11, 2023). <https://www.sec.gov/files/rules/final/2023/33-11238.pdf>
-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SEC Issues Names Rule FAQs and Extends Compliance Dates* (Apr. 8, 2025). [https://www.stblaw.com/about-us/publications/view/2025/04/08/sec-issues-names-rules-faqs-and-extends-compliance-dates-\(registered-funds-regulatory-update\)](https://www.stblaw.com/about-us/publications/view/2025/04/08/sec-issues-names-rules-faqs-and-extends-compliance-dates-(registered-funds-regulatory-update))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Extends Compliance Dates for Amendments to Investment Company Names Rule*, Press Release No. 2025-54 (Mar. 14, 2025).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5-54>
- Eurosif, *SFDR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last updated July 3, 2025). <https://www.eurosif.org/policies/sfdr-sustainable-finance-disclosure-regulation/>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Supervision and Convergence (ESMA's Activities)*. <https://www.esma.europa.eu/esmas-activities>
- Herbert Smith Freehills LLP, *ESMA Guidelines on ESG or Sustainability-Related Fund Names: National Regulator Compliance Guide* (Mar. 3, 2025).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implifies Transparency Rules for Sustainable Financial Products* (Nov. 20, 2025).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commission-simplifies-transparency-rules-sustainable-financial-products_en

- Arendt & Medernach, *SFDR 2.0 – EU Commission Publishes Legislative Proposal to Review SFDR* (Nov. 20, 2025). [SFDR 2.0 – EU Commission publishes legislative proposal to review SFDR - Arendt](#)
- PwC Switzerland. *The SFDR Overhaul: New Categories, New Rules*. PwC Insights, available at <https://www.pwc.ch/en/insights/sustainability/sfdr-overhaul.html>
- Carbone 4. *SFDR 2.0: Let's Answer Your Questions*. Carbone 4 Consulting, Dec. 19, 2025, available at <https://www.carbone4.com/en/article-sustainable-finance-disclosure-regulation>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Disclosure and Reporting Guidelines for Retail ESG Funds*, Circular No. CFC 02/2022 (July 28, 2022). <https://www.mas.gov.sg/regulation/circulars/cfc-02-2022---disclosure-and-reporting-guidelines-for-retail-esg-funds>
- 머니투데이, 「금감원, ESG 펀드 공시기준 마련...그린워싱 차단」 (2023. 10. 5.). <https://biz.sbs.co.kr/article/20000138152>
- 금융감독원, 「ESG 펀드 공시기준」 (2023. 10. 5. 발표, 2024. 2. 시행).
- 이민경, “ESG 펀드 명칭규제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 미국과 유럽의 입법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39권 제1호 (2025).
- *In the Matter of BNY Mellon Investment Adviser, Inc.*, Investment Advisers Act Release No. 6032; Investment Company Act Release No. 34591 (May 23, 2022). <https://www.sec.gov/files/litigation/admin/2022/ia-6032.pdf>
- *In the Matter of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Investment Advisers Act Release No. 6189 (Nov. 22, 2022). <https://www.sec.gov/files/litigation/admin/2022/ia-6189.pdf>
- *In the Matter of DWS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 Investment Advisers Act Release No. 6432 (Sept. 25, 2023). <https://www.sec.gov/files/litigation/admin/2023/ia-6432.pdf>
- *In the Matter of WisdomTree Asset Management, Inc.*, Investment Advisers Act Release No. 6753; Investment Company Act Release No. 35364 (Oct. 21, 2024). <https://www.sec.gov/files/litigation/admin/2024/ia-6753.pdf>
- *In the Matter of Invesco Advisers, Inc.*, Investment Advisers Act Release No. 6770 (Nov. 8, 2024). <https://www.sec.gov/files/litigation/admin/2024/ia-6770.pdf>
-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 *Administrative Sanction of 15 October 2024* (Nov. 29, 2024). <https://www.cssf.lu/en/Document/administrative-sanction-of-15-october-2024>
- France 24, *Deutsche Bank Asset Manager DWS Fined €25 Million for Greenwashing* (Apr. 2, 2025).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50402-deutsche-bank-asset-manager-dws-fined-25-mn-euros-for-greenwashing>
-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ccord de Composition Administrative avec Primonial REIM France* (Feb. 28, 2024). <https://www.amf-france.org/fr/sanctions-transactions/transactions/transactions-homologues/accord-de-composition-administrative-conclu-le-28-fevrier-2024-avec-primonial-reim-france>
- ClientEarth, *ClientEarth's Complaint to the AMF on BlackRock's Misleading Marketing Claims* (Oct. 17, 2024). <https://www.clientearth.org/latest/documents/clientearths-complaint-to-the-amf-on-blackrocks-misleading-marketing-claims/>
- Responsible Investor, *EU Regulators Outline Diverse Enforcement Plans for ESMA Naming Rule Non-Compliance* (Apr. 16, 2025). <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eu-regulators-outline-diverse-enforcement-plans-for-esma-naming-rule-non-compliance/>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및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리서치, 법률, 대외 협력, 커뮤니케이션 등의 폭넓은 방법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실질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갑니다.